

의안번호	2209705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5.4.14.
추계번호	25D2224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3조의2 (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특례) 신설	현행 「지방세법」은 지역경제의 발전,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3조의2 (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¹⁾은 ‘지역경제의 발전,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’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를 제주

1) 「지방세법」 제106조(과세대상의 구분 등)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분리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·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

가. ~ 사. (생략)

아.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,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수의 증감이 예상됨

□ 다만 분리과세 대상을 도조례로 정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여질 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 하기가 곤란함

○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유형별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토지분 재산세 세율

구분	재산의 종류	세율	
종합합산	•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·임야 등	0.5억원 이하	0.2%
	•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 토지	0.5 ~ 1억원	10만원 + 초과금액의 0.3%
	•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기준초과 토지	1억원 초과	25만원 + 초과금액의 0.5%
별도합산	• 건물 부속토지 • 인·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	2억원 이하	0.2%
		2 ~ 10억원	40만원 + 초과금액의 0.3%
		10억원 초과	280만원 + 초과금액의 0.4%
분리과세	• 농지·임야 등(생산적 업무용)	0.07%	
	• 공장용지, 공급목적 토지(산업적 업무용)	0.2%	
	•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토지(사행성 업무용)	4%	

자료: 「지방세법」 제111조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763	limhy@nabo.go.kr